제163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본 회 의 회 의 록

제2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면
2.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면

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6. 27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26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6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6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6. 27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, 구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및 생활복지국 폐지 (안 제3조제1항)

○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변경 (안 제3조제1항)

○ 행정관리국, 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 변경 및 신설
(안 제4조제1항, 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제1항)

○ 각 국장 및 소장 업무분장사항 변경. 단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은 제외

○ 기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